

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10. 11.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0. 11.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10. 27.(제12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사회복지과장 정석한)

가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·운영함으로써 민·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, 복지와 보건의 연계·협력의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, 시행, 평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·협력 등의 사항을 심의·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함(안 제2조)
- 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**부구청장·사회복지사무소장·보건소장**은 당연직위원이 됨. (안 제3조)
-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 내에 **실무협의체**를 두며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, **복지지원과장, 보건행정과장**은 당연직위원으로 함 (안 제4조)
-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함 (안 제6조)

-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등을 각 협의체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(안 제12조)
- 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음(안 제13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 조례 제정 건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구성,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, 사회복지사업과 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와 건의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완벽한 수립과 시행·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의 손길이 가장 필요하고 보호가 절실히 요청되는 소외되고 불우한 영세 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이 구축 된다고 판단되며
- 특히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·운영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위 조례 제정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중 제11조 「의결사항의 처리」 내용상 후단 단서에 「구청장은 . . .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한다」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임의규정으로 필요에 따라 상황이 수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「구청장은 . . . 이를 시책에 반영해야한다」 라는 강행규정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